

##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철도) 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특별시고시 제287호(1981.7.30.)로 도시계획시설(철도)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181호(1983.3.29.)로 지적승인된 서대문구 현저동 95-1 일대 도시계획시설(철도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철도)을 변경 결정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19년 8월 16일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



### 1. 변경 결정 취지

- 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 4번 출구에 교통편의시설(에스컬레이터)를 신설하여 노약자,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(철도)을 변경 결정하고자함.

### 2.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철도) 경미한 변경 결정 조서

- 도시계획시설(철도) 경미한 변경 결정 조서

구분	시설명	시설의 종류		위 치	폭원 (m)	연장 (m)	면적 (㎡)	최 초 결정일	비고
기정	철도	도시철도 (지하철 3호선 )	독립문역	서대문구 현저동 95-1일대	17	206	4,341	서울특별시 고시 제287호 (1981.7.30)	종로구고시 제2014-48호 (2014.6.12.) 면적4,200㎡→ 4,341㎡변경
변경					17	206	4,456		경미한 변경

○ 변경 사유서

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철도 (지하철3호선 독립문역)	현저동102-49일대 독립문역 4번 출구 교통 편의시설(에스컬레이터)신설 [면적 : 4,341㎡ → 4,456㎡ (증 115㎡)]	노약자,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에스컬레이터 신설로 도시계획시설 (철도 : 정거장) 면적이 증가됨

3. 관계도면 : 붙임 참조

※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,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4. 열람장소 : 서대문구 도시관리과(☎ 330-1644)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.